

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7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년 3월 14일

발 의 자 : 김창수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강성언, 김문수, 김미경,
김상훈, 김생환, 김영한,
김종욱, 김희걸, 문영민,
박기열, 박호근, 박준희,
이순자, 장인홍 의원(14명)

1. 제안이유

-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와의 유사·중복 기능으로 인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을 방지함으로써 서울교육 주요 정책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유사·중복의 정책자문위원회를 삭제함(안 제2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 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 조치 : 해당 없음.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2조제1항 각 호 중 “7.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, 10. 체육·수련교육자문위원회, 11. 친환경무상급식자문위원회, 13.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, 14. 수업·평가·연수혁신자문위원회, 16. 영재교육자문위원회, 21. 학교비정규직정책자문위원회”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및”을 삭제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설치) ①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.) 소속 하에 다음 각 호의 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 2.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 3. 학교신설·이전자문위원회 4.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 5.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6.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 7. <u>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</u> 8. 외국어교육정책자문위원회 9. 문화·예술교육자문위원회 10. <u>체육·수련교육자문위원회</u> 11. <u>친환경무상급식자문위원회</u> 12. 학부모지원정책자문위원회 13. <u>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</u> 14. <u>수업·평가·연수혁신자문위원회</u> 15. 과학교육자문위원회 16. <u>영재교육자문위원회</u> 17. 환경·생태교육자문위원회 18. 진로·직업교육자문위원회 19.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20. 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 21. <u>학교비정규직정책자문위원회</u> 22. 사학정책자문위원회 <p>② 교육장 소속 하에 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별표와 같다.</p>	<p>제2조(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〈삭제〉 8. ~ 9. (현행과 같음) 10. 〈삭제〉 11. 〈삭제〉 12. (현행과 같음) 13. 〈삭제〉 14. 〈삭제〉 15. (현행과 같음) 16. 〈삭제〉 17. ~ 20. (현행과 같음) 21. 〈삭제〉 22. 사학정책자문위원회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해당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 비대상
조례안임.

3. 미첨부 사유

- 유사·중복의 정책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.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의원 김창수